#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공	보
0	

제1167호 2023. 9. 13. (수)

공 고

제2023-104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_

제2023-1071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 람

발행 : 부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래전략실 (☎309-5411)

##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047호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북구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 기한이 2023.12.31.에 도래됨에 따라 감면 목적 달성 여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감면 연장 필요성을 반영하여 기존 감면을 연장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

- 가. 제4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2023.12.31. → 2026.12.31.
- 나. 제6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2023.12.31. → 2026.12.31.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 2) 연락처 : ☎ 051-309-4183, FAX 051-309-4209,

E-mail: ksbak@korea.kr.

「보이	1 1	
	i I.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조문	의견사항		
2.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6조 본문 중"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4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설립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증가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23년	
<u>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u>2026년</u>
	<u>12월 31일</u>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u>2026년 12월 31일</u>
한다)를 <u>2023년 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참고

구세감면조례 관계 법령

조례 감면 및 일몰 연장 근거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③ 생략

##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1071호

##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지하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하수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 2023. 12. 31. ⇒ 2028. 12. 31.
- 나. 상위법 조항에 따른 적용조항 개정 및 띄어쓰기 수정

#### 3.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우편번호 46504)

- 연 락 처 : 전화 051-309-4384. 팩스 051-309-4398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방문 등

-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 1]

##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u>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u>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2028년 12월 31일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생 략)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②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u>「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u>		
<u>관한 법률」 제19조</u> 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구청장은 지하수	제2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 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붙임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Ol		비고
. 기경 <b>소네진 대중</b>	찬 성	반 대	의	견	01 17